

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

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유자중의 1인인 원고가 자기 명의로만 한 이의신청의 효력은 당해 원고에게만 미친다.<BR>(대법원 1982.07.13. 선고 80누405,406 판결)<BR>